

제419회 임시회

' 24. 7. 15.(월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·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4년 7월 3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7월 3일

3. 제안이유

○ 출산가정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

4. 주요내용

○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(안 제10조의2)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 및 필요성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저출생 대응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음.

○ 충청북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.

<충청북도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>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(잠정치)
출생아 수	9,333명	8,607명	8,190명	7,452명	7,600명
합계출산율	1.050	0.983	0.949	0.871	0.890

※자료: 통계청, 인구동향조사

○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전국 거주 25세~49세 남녀 2천명을 대상

으로 실시한 '결혼·출산·양육 인식조사('24)' 결과에 따르면, 응답자의 58%가 양육비용 등 경제적 부담 이유를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남.

-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산 비용으로 받은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됨.

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조례안 제10조의2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산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은 출산 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임.
- 출산 가정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「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제8조제1항2)에 따라 포괄적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음. 다만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1항3)에 따라 개인에 대한 공금 지출의 경우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에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.
-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4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772,800천원(도비 50%, 시군비 50%)이 계상되어 기(既) 의결된 바 있는 사업으로,
  - 사업대상은 도내 기준 중위소득 180%이하(4인 가족 기준 월 1천31만원 이하, '24년 기준)이며 지원내용은 대출한도 1,000만원 한도 내 3년 간

2) 제8조(인구정책사업) ① 도지사는 인구구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### 1. 결혼·임신·출산·양육·유입인구에 대한 지원사업

3)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<개정 2014. 5. 28.>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
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
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
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출생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사업으로 판단됨.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산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은 출산 가정에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,
  - 충청북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경제적 부담이 출산의 주요 기피 이유인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.
  
- 다만 본 사업의 경우, 도 내 11개 시·군 중 사업 대상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청주시와 아직까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.
  - 따라서 이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청주시와의 조속한 협의가 요구됨.
  
- 본 조례안은 내용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,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음. 또한 조례안 예고 등 입법 절차를 거친 바 타당하다고 판단됨.